붙임 3 **경력환산율표**

경력환산율표

구 분	환산율	경력내용
제1류	100%	1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3.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2년까지 4.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
제2류	60%	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제1류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력 2. 정당, 언론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3.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
제3류	40%	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 (자영업 및 일용직 근무경력 제외)

비고: “공공단체”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 및 지방자치법규에 의해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